

전자무역관습의 변화에 따른 Incoterms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Direction of Incoterm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e-Trade Customs

정 우 경** Woo-Kyung Jung
김 태 인*** Tae-In Kim

| 목 차 |

I. 서 론	IV. Incoterms 개정방향에 대한 제언
II. 전자무역관습의 변화와 스마트워킹화	V. 논의 및 결론
III. 전자무역관습과 Incoterms 개정사 분석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ICC는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에 대응하고자 Incoterms 등의 국제무역규칙을 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8차 개정을 위해 Drafting Group을 구성하여 차기 Incoterms의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스마트워킹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워킹은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업무를 수행한다는 개념으로, 모바일오피스는 스마트워킹의 대표적인 업무형태이다. 스마트워킹은 기업 종사자의 업무 수행 형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국제무역거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전자무역관습의 변화를 동반하였다.

* 이 논문은 2017년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관리번호-520170105)

**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1저자, E-Mail: elvis2jung@gmail.com

***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교신저자, E-Mail: tikim@kangwon.ac.kr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전자무역관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전자문서정보화에 대한 Incoterms의 개정과정을 분석하여 Incoterms 8차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Incoterms 8차 개정, 전자무역관습, 스마트워크, 모바일오피스

I. 서론

1920년에 설립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는 교역국 간의 서로 상이한 법률체제와 언어, 관습 등의 차이로 야기되는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1936년 "무역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채택하였다. 산업의 진화와 더불어 변화하는 국제무역 환경을 고려하여 10년 주기로 Incoterms 2010까지 7차 개정을 하였으며, 현재 ICC에서는 제8차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ICC의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Incoterms의 개정을 위한 Drafting Group이 법률전문가, 무역전문가, 기업 대표 등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었고¹⁾, 또한 2017년 3월 8일에서 10일까지 3일간 Incoterms@2020 Drafting Group Meeting이 파리²⁾에서 진행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ICC의 상법 및 실무법위원회(Commission on Commercial Law and Practices, 이하 'CLP')는 Incoterms Drafting Group과 2017년 9월 28일에서 2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핀란드 등 12개 국가와 지역에서 참여한 17명의 국가위원회대표와 Incoterms의 적용과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³⁾

최근 국제무역의 업무환경은 2010년 전후로 개발되어 상용화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의 전자정보처리장치의 발달로 장소와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고 사무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PC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휴대용 전자정보처리장치 상에 적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으로 진화하였으며, 어플 또는 앱(App.)

1) <https://iccwbo.org/resources-for-business/incoterms-rules/incoterms-rules-history/>, To keep pace with the ever-evolving global trade landscape, the latest update to the trade terms is currently in progress and is set to be unveiled in 2020. The Incoterms® 2020 Drafting Group includes lawyers, traders and company representatives from around the world. The overall process will take two years as practical input on what works and what could possibly be improved will be collected from a range of Incoterms® rules users worldwide and studied.

2) <https://www.iccwbo.be/event/incoterms-2020-drafting-group-meeting/> 2018.07.04

3) http://www.chinatradenews.com.cn/epaper/content/2017-10/12/content_48608.htm 2018.07.04

이라고 통칭되는 어플리케이션은 EDI 시스템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의 소프트웨어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상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통신환경의 변화는 업무수행 방식의 스마트 워크화로 전환을 야기하였으며, 국제거래에서 거래 양당사자간의 업무 연락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최근의 국제무역환경은 전자무역의 구조적인 변화가 두드러지나, Incoterms상의 무역정보화와 관련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무역계약에 있어서의 정형거래조건과 각 조건별 운송과 보험 등의 비용 및 위험 이전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전자문서교환 방식 수용에 대하여는 간략하게만 언급 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진화하고 있는 전자무역관습에 중점을 두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국제무역환경의 변화가 무역업무처리 및 서류 교환방식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이어 전자무역관습이 반영된 Incoterms Rules의 개정과정을 분석하여, 새로운 Incoterms의 8차 개정방향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은 세계적인 전자무역관습의 변화와 국제무역규칙의 개정사를 중심으로 탐구한 문헌자료 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

II. 전자무역관습의 변화와 스마트워크화

관습(Custom, Usage)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구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관행, 일반관행, 사실인 관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법률적 시각으로는 사실인 관습(Usage⁴⁾)과 법률인 관습으로 구분되며, 법률인 관습은 관습법(Customary Law)이라고 부른다. 사실인 관습은 일반관행으로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며, 임의규정과 같이 법률 행위의 해석기준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인 관습에 법적확신(Opinio Juris)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규범으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이를 관습법이라고 한다⁵⁾. 국제무역의 관습법으로는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적용되는 임의규정인 ICC에서 제정한 Incoterms Rules이 대표적이다. ICC는 변화하는 국제무역관습을 적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국제무역규칙을 개정하여, 발생 가능한 무역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

4) 한낙현 김은주, 2003 해상적하보험계약의 클레임 준거법 조항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25(2) pp.57-87. “일정한 지역, 거래, 직업, 절차에 있어서 장기간 획일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실무 또는 행위를 말한다. custom보다는 일반성이 적고 그만큼 규범성이 약하다.”

5) <https://ko.wikipedia.org/wiki/%EA%B4%80%EC%8A%B5> 2018.07.20

력하고 있다.

상관습(Trade Usage, Mercantile Custom)은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들 간에 암묵적인 승인과 전통적인 거래형식으로 준수되고 있는 상행위를 나타낸다. Asaoka Ryohei(朝岡良平)(1981)는 광의의 상관습을 상인이 보편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영리활동에 관한 행위를 가리키며, 협의로는 단순한 물품의 매매 행위만을 나타내는 매매관습 또는 거래관습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무역관습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크게 일부 특정장소 또는 지역에 적용되는 지역적 관습(Local Usage)과 다수의 지역을 포함하는 광대한 영역 또는 하나의 국가의 모든 경제적 영역에 통용되는 전국적 성향을 지닌 일반관습(General Usage)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어떤 특징적인 거래관습이 특정지역에서 특정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부분 역시 배제할 수 없음을 언급하였다.

무역관습(International Trade Custom)은 매매계약, 운송, 해상보험, 대금결제 등 국제무역과 가치사슬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오랜 시간에 걸쳐 점차 널리 형성되어 왔다(김철호, 2010). 이러한 무역관습은 그 시대별 교통·통신기술의 발전, 각종 법률 또는 제도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여 왔다. 오늘날의 무역관습은 19세기 말에 확립되어, 20세기 이후 등장한 화환신용장 등으로 인해 현재의 무역관습으로 발달하였다(朝岡良平, 1981). 최근 국제무역환경은 20세기 말 정보통신기술들이 활용되면서 인터넷과 퍼스널컴퓨터의 등장으로 전자무역이라는 개념이 탄생하였다. 21세기 진입 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지 업무를 볼 수 있는 모바일오피스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전자무역관습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 전자무역관습의 등장 배경

1) 무역관습의 생성요건

Asaoka Ryohei(朝岡良平)(1981)는 상관습의 생성원인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상업에 영위하는 상인은 영향력과 전통적인 관례행위를 선호하고, 상거래는 단순하고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며, 합리성을 요구한다. 이에 상인들은 합리적이고 안정한 거래를 위해 과거 경험을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거래방법을 요구한다. 이러한 거래관행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래방법으로 형성되어 상관습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상관습은 운송, 보험, 금융 등 각종 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첨단기술의 발달은 각종 제도의 변화를 초래하고 그 결과 매매거래의 이행방법에도 변화를 주도하여 새로운 거래관습으로 나타난다. 첨단기술의 발달이 국제무역환경에 미친 영향은 대표적으로 산업혁명을 들 수

있다. 즉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기선 시대가 도래하여 해상운송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2차 세계대전에 군수물품 운송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컨테이너의 등장으로 복합운송이 실현되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과 퍼스널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EDI 시스템이 개발되어, 전자무역이라는 새로운 매매형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개발로 인해 모바일오피스라는 새로운 업무형태를 탄생시켰다.

2) 전자무역관습의 등장

무역관습은 19세기 산업혁명을 계기로 범선무역(Sailing Boat Trade)시대에서 기선무역시대(Motor Vessel Trade)로 변천되었다. 범선무역시대의 무역관습은 매수인 측의 양륙지에서 매매를 진행하는 도착조건(On Arrival Terms)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관행이 주를 이루었다. 기선무역시대의 특징은 매도인 측 선적항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인 FOB나 CIF의 관습하에 매매형태가 정착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즉, 범선무역시대의 즉시매매(Present Sale) 방식이 격지간 거래(Distant Sale)로 변화되었다. 격지간 거래는 통상화대를 유도하였고, 해운, 보험, 금융 등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또한 20세기까지 고도의 분업화를 이룩하였고 세계무역을 크게 증대시켜, 1800년대 15억 달러의 세계 총 수출액이 1900년에는 200억 달러, 1980년대에는 2조 달러에 달하였다(김안식, 1985).

1960년대에는 UN/ECE가 중심이 되어 무역서류의 표준화 및 무역절차의 간소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운송수단의 고속화로 인하여 세계무역거래량의 증대와 운송기간의 단축은 무역절차의 간소화 및 서류처리의 신속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운송수단의 주요 발달 내용은 운송의 신속화(항공운송의 등장, 선박의 대형화), 컨테이너 운송방식(단위적재시스템, Unit Load System)의 출현, 노동력을 대체한 하역설비의 기계화, 화물터미널의 기능화 등이 있다. 대량화물 취급이 가능해진 화물운송시스템의 발전으로 운송시간이 대폭 단축되었다. 그 후 통신과 운송기술의 발전 및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우편, Cable 등에 의한 정보전달 방식이 텔렉스 전송 방식으로 교체되었다(김철호, 2014). 또한 컴퓨터의 발달로 1970년대 영국, 프랑스, 일본, 서독,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선진국에서 통관절차의 일부가 전산화 된 것을 시작으로 수출입허가절차 및 기업 간 업무방식에 있어 사무절차의 전산화가 진행되었다(김안식, 1988). 서류를 목적지에 신속히 전달하기 위한 무역절차 간소화 운동은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화물에 관한 정보 일체를 컴퓨터에 입력 후 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즉시 목적지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서류전송을 데이터 전송으로 교체함으로써 인하여 기존의 서류업무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의 절감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향상 시켰다.(김안식, 1985) 이러한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서류의

표준화와 더불어 인터넷과 퍼스널컴퓨터의 등장은 무서류 무역시대(Documentless Trade)를 전개하였으며, 전자상거래 방식이라는 새로운 매매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선진국과 국제무역관련 기구들은 점차 확산되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에 대응하여 Incoterms와 UCP 등 국제규범에 전자적 서류 발급과 전자서명 등에 대하여 전자무역관습의 변천 내용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1990년대 인터넷의 확산과 퍼스널 컴퓨터의 보급은 전자무역관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김철호, 2014).

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업무환경의 변화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탄생하였다. 2010년 독일의 'Industry 4.0'이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며,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세계 경제 변화의 과도기하에 자국 산업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혁신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인공지능 기반의 만물 초지능화"이다. 즉 모든 사물의 스마트화라 할 수 있으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주요 혁신 기술로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범세계적인 정보통신산업의 변화와 함께 2010년 전후로 등장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IT 산업의 발전은 온라인 중심의 정보지식사회로 진화를 야기함에 따라 종이서류 중심의 전통적 무역관습에서 전자무역관습으로 전환되어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사회로의 전환은 경제주체인 사람의 모든 활동에 혁명을 초래하고 있으며, SNS라는 가상공간을 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유형이 창출되고 있다(김철호, 2014).

1) 스마트워크(Smart Work)

1992년 IBM이 최초로 스마트폰을 개발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에 RIM사의 블랙베리폰을 시작으로 대중화되었다. 스마트폰은 터치스크린 기술과 결합하여 태블릿 PC라는 새로운 형태의 PC시장을 활성화시켰다. 이러한 IT 디바이스의 발전은 "스마트워크, 모바일오피스, 모바일커뮤니케이션, 웹2.0"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과 더불어 전통적인 기업의 업무 처리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기업의 구성원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PC를 활용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서도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 디바이스와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메일 작성 및 송수신, 전자문서 결제, 고객관리 등 전반적인 사무업무를 손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김경남·박지혜·정도범, 2011;

서아영, 2012). 남수현·노규성·김유경(2011)은 모바일 시스템과 웹2.0⁶⁾기반의 다양한 정보시스템의 통합적 운영은 근로자가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스마트워크(Smart Work)라 정의하였다. 스마트워크의 개념은 시공간의 유연성을 기준으로 하여, 원격근무(Teleworking), 재택근무(Telecommuting), 자유근무시간제(Flexible Working) 등의 용어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심원보, 2012). 해외에서 텔레워크(Telework)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저출산고령화, 노동생산성 증대, 온실가스 감축 등의 사회적 현안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에서는 사회문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스마트워크제도를 확산하고 있다(박승권·이주한, 2012). 이와 같이 스마트워크는 각 국가별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을 통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워크의 업무 형태는 시공간적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모바일 오피스, 자택에서 업무 공간과 시설을 구비한 재택근무 또는 1인 기업 형식의 홈오피스, 사무실 환경과 유사하거나 보다 창의적인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스마트워크센터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남수현 외, 2011). 박승권 외(2012)는 직장에서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스마트오피스를 추가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성민경·방선희·권성호(2011)은 모바일, 홈, 센터 및 직장 모든 스마트워크 솔루션을 활용한 상호간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원격협업(Remote Collaboration)을 포함하여 총 5가지로 분류하였다.

스마트워크의 대표적인 업무형태인 “모바일 오피스(Mobile Office)”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즉 모바일 단말기와 Office 관련 어플 및 이동통신망으로 구성된 모바일 플랫폼이다. 모바일 오피스의 등장은 업무 담당자를 실내에서 실외로 인도하여, 업무 처리의 신속함과 효율의 향상을 가져다주었다.

2) 모바일오피스에 의한 국제무역 업무처리 방식의 진화

IT 디바이스와 인터넷의 발달로 실현가능하게 된 스마트워크 환경의 특징은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시간과 장소의 경계를 넘어 직원 간 또는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모바일 운영체계의 등장은 PC 소프트웨어를 모바일에 적합하게 전환할 수 있으며, PC프로그램과 모바일 어플 간의 연동 역시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모바

6) 2004년 10월 오라일리미디어사(O'Reilly Media, Inc.)의 대표인 Tim O'Reilly에 의해 도입된 개념으로, Web2.0=platform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인터넷이 있는 환경이라면 어디에서라도 데이터를 생성하여 공유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개방형 인터넷 환경을 나타낸다.

일오피스라는 개념을 탄생시킨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모바일 오피스의 핵심기술인 모바일 어플의 등장으로 변화된 업무처리방식이 국제거래에 미친 영향은 첫째, 기존 PC소프트웨어로만 사용하던 기업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모바일 어플화 하여 모바일에서도 기업내부 의사결정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사내 전산시스템인 전자적자원관리(ERP), 고객관계관리(CRM), 공급망관리(SCM)등의 업무를 해외출장 또는 공사현장 등 사외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관련 담당자와의 신속한 의사소통을 통해 관련사항의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EDI시스템 등 국제거래와 관련된 국제물류유통과 관련한 시스템도 모바일 어플과 연계가 되어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서의 수발신 역시 모바일 상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모바일 어플인 Wechat과 카카오톡 등의 SNS는 해외바이어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실시간 채팅 기능과 문서 송수신이 가능하며, 유선통화와 화상채팅과 같은 기능도 가능하다. 이는 기존 해외 고객 또는 파트너사와의 공간적인 문제로 제약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해소하여 주었다. 즉 모바일 SNS 어플을 통해 업무관련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사내 담당자, 고객사의 업무담당자 등을 초대하여 해당프로젝트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한다. 넷째, 새로운 전자상거래 유형의 등장을 야기하였다. 국제무역은 전통적으로 B2B 시장이었으나,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B2C와 C2C 등의 전자상거래 유형이 등장하였다. 즉, 소비자 또는 1인 기업 등 개인으로 볼 수 있는 경제주체가 직구쇼핑몰 또는 역직구 쇼핑몰 등을 통하여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구매하고 수입 통관 절차를 진행한다.

Ⅲ. 전자무역관습과 Incoterms 개정사 분석

1. Incoterms 개정사상 전자무역관습

1980년대 이후 EDI System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ICC는 Incoterms 1990부터 EDI 방식을 수용하였고, 전자정보에 관련한 인정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Incoterms 1990과 2000 및 2010의 전자정보 관련 내용의 변천과정과 개정된 사유를 비교 분석하였다.

1) Incoterms 1990

Incoterms 1990의 서문 “Why new Incoterms?”에서는 전자정보통신(EDI)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무역거래조건에 수용하기 위해서 1990을 주요 개정 사유를 언급하였고, EDI 방식의 서류가 종이서류인 선하증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됨을 개정의 배경으로 설명하였다⁷⁾.

서문 “The bill of lading and EDI procedures”에서는 선하증권(B/L)이 EDI로 대체될 경우의 문제점을 서술하였으며, 이러한 ‘특수한 법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EDI 절차에 의하여 대체될 것을 예상하여 Incoterms 1990개정판에 이 예상되는 발전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였다⁸⁾’고 개정 사유를 강조하였고, 이러한 EDI방식을 수용하기 위해 각 정형거래조건별에 EDI에 대한 수용방식을 A.1., A.8., A.10., B.8., B.10.항에 적용하였다. 특히 매도인의 의무인 A.8.항에는 거래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즉 새로운 통신수단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당사자의 의무내용을 미래 지향적으로 개편 적용하였다.

Incoterms 1990의 개정목적과 그 배경을 다시 정리하자면, 이는 20세기 말 세계무역이 비서류무역(Non-Paper Document Trade)의 새로운 경향에 점차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주목한 것이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대응자세로 무역에 있어 신속함(Immediacy)과 정확성(Accuracy)을 향상시키고 세계무역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적용한 것이다. 전통적인 무역서류(Paper Documents)를 대신하여 물품인도나 대금지불 등의 무역 관련 업무의 자료들이 점차 EDI로 대체될 가능성을 기대하여, Incoterms 1990에 EDI방식을 수용함으로써 매매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해 EDI방식으로 대체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류무역(Paper Document Trade)에서 사용되었던 법률상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양영환, 1991).

7) “The main reason for the 1990 revision of Incoterms was the desire to adapt terms to the increasing use of electronic data interchange(EDI). In the present 1990 version of Incoterms this is possible when the parties have to provide various documents(such as commercial invoices, documents needed for customs clearance or documents in proof of delivery of the goods as well as transport documents). Particular problems arise when the seller has to present a negotiable transport document and notably the bill of lading which is frequently used for the purposes of selling the goods while they are being carried. In these cases it is of vital importance, when using EDI messages, to ensure that the buyer has the same legal position as he would have obtained if he had received a bill of lading from the seller.”

8) In spite of the particular legal nature of the bill of lading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replaced by EDI procedures in the near future. The 1990 version of Incoterms has taken this expected development into proper account.

2) Incoterms 2000

Incoterms 2000의 개정 배경은 EU와 같은 과세자유지대의 확대와 전자거래에서 전자통신문의 사용 확대 및 국제운송관습의 변화 등이 주된 배경이며, 이러한 무역환경의 변화 예측 부분을 1990년 개정배경과 유사하다(이정호, 2001). 1990년 이래 무역업계에서 그 필요성과 상용성 등을 인정받아 점차 널리 활용되고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Incoterms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위해 지나친 변경을 피하여 Incoterms 2000의 구성과 내용은 Incoterms 1990 대비 변경사항이 많지 않다.

EDI와 관련하여 Incoterms 2000의 “Why Revisions of Incoterms?”에서는 “Further, in the 1990 revision of Incoterms, the clauses dealing with the seller's obligation to provide proof of delivery permitted a replacement of paper documentation by EDI-messages provided the parties has agreed to communicate electronically. Needless to say, efforts are constantly made to improve upon the drafting and presentation of Incoterms in order to facilitate their practical implementation.” 이라 언급하면서 실무에 있어서 실행을 좀 더 용이하기 위한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지속적인 전자적 통신 방식에 대한 연구의 의지를 나타내었다.

서문 제19장 The Bill of Lading and Electronic Commerce(선하증권과 전자상거래)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 EDI를 Electronic Commerce로 변경하였으며, 기존의 BOLERO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1990년 전자식 선하증권을 위한 CMI규칙(CMI 1990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이나 “1996년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1996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의 제16~17조에 의해 입증되는 것처럼 적절한 법적 규범 및 원칙에 의한 지지가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법적인 근거와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⁹⁾.

BOLERO Service(www.bolero.net)는 1995년 6월 미국,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와 홍콩이 함께 진행한 Project Bolero(Bills of Lading for Europe)로 시작되어 Bolero Association Ltd.와 Bolero Operation Ltd.에서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역서류 전산화 시스템이다. 1995년 7~9월 3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세계 18개 무역권에 대한 법률분석을 완료한 뒤 시범기간을 거쳐 상용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BOLERO Service와 국제기구 및 국제법규에 대한 언급은 점차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통신에 대한 본격적인 사용 확대에

9) Systems providing such services, such as the so-called BOLERO service, may require further support by appropriate legal norms and principles as evidenced by the CMI 1990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and articles 16-17 of the 1996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대비한 것으로 서문 “Why Revisions of Incoterms?”에서 언급된 ‘Needless to say, efforts are constantly made to improve upon the drafting and presentation of Incoterms in order to facilitate their practical implementation(실무에 있어서 실행을 좀 더 용이하기 위한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3) Incoterms 2010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정형거래조건 13가지를 11가지로 축소 및 변경하였으며, “모든 운송방식을 위한 규칙(Rules for Any Mode of Modes of Transport)”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을 위한 규칙(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의 운송방식을 기준으로 한 2가지 분류로 구분하였고, 국내거래에 대한 적용을 공식화 하였다.

Incoterms 2010 서문에서는 상거래에서 전자적 통신의 사용 증대(...the increased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business transactions...)를 하나의 개정사유로 언급하였다. Incoterms 2000의 서문 제19장 선하증권과 전자상거래(The bill of lading and electronic commerce)에서 사용하였던 용어 “electronic commerce(전자상거래)”를 “5장 Electronic communication(전자적 통신)”으로 진화하는 전자적 통신 방식을 수용하기 위해 그 의미를 확대하였다. 각 규칙 A1/B1에 당사자 간 합의나 관행이 있는 경우, 전자적 형태의 통신이 종이에 의한 통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새로운 전자적 절차의 개발을 활성화한다고 명시하였다¹⁰⁾. 또한 처음으로 “Explanation of terms used in the Incoterms 2010 rules”의 용어 설명에 “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전자적 기록 또는 절차)¹¹⁾”에 대한 설명을 삽입하여 전자적 문서의 범위와 절차를 정의하였다.

ICC는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에 따라 약 10년 주기로 개정하고 있는 Incoterms는 현재 8차 개정인 2020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개정 중, 인터넷과 PC의 발전으로 EDI시스템이 등장하면서 1990부터 EDI 방식을 수용하였고, 현재 2010까지의 전자적 문서 교환시스템 관련한 용어와 합의 등이 개정되었다. <그림1>은 전자무역관습 수용한 Incoterms Rules의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하였다.

10) Articles A1/B1 of the Incoterms® 2010 rules, however, now give electronic means of communication the same effect as paper communication, as long as the parties so agree or where customary. This formulation facilitates the evolution of new electronic procedures throughout the lifetime of the Incoterms® 2010 rules

11) A set of information constituted of one or more electronic messages and, where applicable, being functionally equivalent with the corresponding paper document.

〈그림 1〉 EDI 관련 Incoterms 개정 주요내용



자료 : 저자 작성

4) Incoterms 8차 개정과정

ICC CLP(Commission on Commercial Law and Practices)의 2018년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는 Incoterms 2020의 개정과 세계적인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개발이다¹²⁾. 노르웨이(Norway) ICC 홈페이지에는 2017년 9월에 북경에서 진행된 ICC CLP 회의 내용이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Incoterms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2010버전에서 주요 개정사항이 새로운 2020의 출발점이라는 시각으로 2010버전의 8가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 2020개정을 위해 수집한 국가별 의견에 근거하여 추가 개정작업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¹³⁾.

ICC노르웨이 홈페이지에 2017년 9월 29일 중국 북경에서의 회의 내용이 공개되기 몇 일전인 2017년 9월 25일에 경제학자 Olegario LLamazares가 Global Negotiator Blog에 "Incoterms 2020: Main Changes"를 공개하였다. Drafting Group에 처음으로 중국과 오스트리아가 참가하였으며, 2019년 4분기에 새로운 Incoterms가 승인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예정이라 언급하였다. Olegario LLamazares는 Incoterms 2020의 개정방향 중 전자문서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거래조건에 대하여 기존 거래 조건의 삭제와 이분화, 컨테이너운송 및 신규 조건 등 6개 사항을 언급하였다¹⁴⁾. 다만 이 내용들은 베이징 회의에서 구조적인 변화로 제안되고 논의되었으나, 차기 Incoterms에 적용될 사항에서 제외

12) ICC(2018), ICC CLP's Project for 2018, <https://www.iccwbo.be/the-commissions/commercial-law-and-practice/> ICC programme of action 2017-2018 "Revise the Incoterms® 2010 rules and continue to develop practical tools and expert guidance to promote the effective use of the Incoterms® 2010 rules globally"

13) ICC(Norway), Incoterms 2020, <http://www.iccnorge.no/4706-Incoterms-2020> 2018.07.05

14) Olegario LLamazares(2017), Incoterms 2020: main changes, Available at https://www.globalnegotiator.com/blog_en/incoterms-2020-main-changes/

된 듯하다.

ICC 노르웨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Incoterms 2020개정방향에 대한 내용은 크게 7차 개정 원인 분석, 1차 초안인 국가별 의견 수집 검토, 신규 개정에 도입 가능성이 높은 사항들에 대한 검토로 진행되었다. 새로운 Incoterms에 도입 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으로는 '위험과 비용 분기점에 대한 10대 의무',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VGM, Verified Gross Mass)', 'EXW의 적재규정', 'FOB와 FCA에 컨테이너 운송에 대한 세부사항 추가' 등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현재 온라인상으로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진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Incoterms 각 조건의 구조적인 변화는 예측 가능하나, Electronic Communication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기업 간의 서류 전달 방식의 진화는 관련 법규상에 진화된 기술적 기준과 정의를 실시간적으로 적용하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시대적 발전사항을 법률상에 적용하는 것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상관습 및 국제규칙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에 시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적용 시간은 기업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IV. Incoterms 개정방향에 대한 제언

무역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물품 매매에 대한 의사표시가 서로 합의점에 도달하여 체결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의사표시이다. 의사표시의 표시행위는 말이나 동작, 문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법률적으로는 문서에만 별도의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종이문서를 기준으로 한 국제계약법규는 전자문서계약에 적용상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였고, 전자계약의 '성립요건', '청약과 승낙의 기준', '청약의 유인', '전자계약 당사자의 소재지', '전자적 의사표시의 승인 및 형식 요건', '전자문서 수·발신 시기 및 장소', '전자문서의 문서성과 그 증거력', '전자문서 송수신 행위자의 법적 지위' 등이 그 동안의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심중석, 2010).

양재모(2011)는 전자거래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거래로, 전자적 의사표시란 전자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행하여진 의사표시이다. 즉 민법상 의사표시에 전자적 방식을 적용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전자거래법은 전자적 문서형식으로 매매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로서 문서적 형태의 전자적 저장정보가 아닌 다른 유형의 전자적 지

장정보 방식은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Incoterms는 운송방법, 운임부담자, 보험의 담보조건, 보험부담자, 지급방법과 그 시기 등에 대한 무역거래관습을 3글자의 영문으로 정형화하여 통일된 해석이며 불요식계약인 구두계약을 포함하고 있어, eUCP와 로테르담규칙 등의 운송 또는 대금지급관련 국제무역 규칙과 같이 종이서류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지기 위한 전자서류의 구성내용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타 국제무역규칙과 그 성질이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1.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의 법·제도적 한계성

무역계약과 관련된 각 종 국제협약과 법제에 사용된 ‘전자기록’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표현되는 용어가 상이하여 그 정의와 범위에 차이가 있다. 1990년 6월 국제해사위원회 제 34차 회의에서 ‘전자선화증권을 위한 CMI규칙(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을 채택하였다. 제2조에서는 전자기록에 대해 저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Electronic storage”라 표현하였으며, “전자 자료의 원본과 백업본을 포함하는 일시적, 중간적, 또는 영구적인 모든 전자 자료를 나타낸다¹⁵⁾”라고 정의하였다. 1996년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가 채택한 “전자상거래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에서는 “Data Messag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전자적, 광학적 또는 유사한 수단에 의해 생성, 전송, 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로, 전자 데이터 교환(EDI), 이메일, 전보, Telex, Fax에만 제한시키지 않는다”라고 정의하였다¹⁶⁾. 1999년 미국 통일주법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에서 제정한 통일전자거래법(UETA,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은 “Electronic record”를 사용하여 그 정의를 “전자 방식으로 생성, 전송, 수신 또는 저장된 기록”라 하였다¹⁷⁾. 2005년에 체결된 “UECIC(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에서는 전자상거래 모델법에서 사용된 용어 “Data Message”를 적용하였고, “Electronic Communication”에 대해서는 “Data Message를 사용하여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소통”이라고 정의하였다¹⁸⁾.

15) 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Article 2(i), Electronic storage means any temporary, intermediate or permanent storage of electronic data including the primary and the back-up storage of such data.

16) UNCITRAL Model Law, Article 2(a) (“Data message” means information generated, sent, received or stored by electronic, optical or similar mea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electronic mail, telegram, telex or telecopy;)

17) UETA, Section 2(7) (“Electronic record” means a record created, generated, sent, communicated, received, or stored by electronic means.)

18) UN Convention, Article 4(b) (“Electronic communication” means any communication that the parties make by means of data messages;)

2008년 12월 UN에서 확정하고 채택한 로테르담규칙(Rotterdam Rules)¹⁹⁾에서는 “Electronic Communication²⁰⁾”은 “전자적, 광학적, 디지털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발생되고, 발행되고, 수령되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의미하고 그 통신된 정보는 이후에도 참고 할 수 있어야한다”라 정의하였다. “Electronic Transport Record²¹⁾”에 대하여는 “운송계약상 운송인이 전자통신에 의하여 발행하는 한 통 또는 수통의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로서, 운송계약에 기초하여 운송인 또는 이행당사자가 화물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하고, 운송계약을 증명하거나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

ICC에서 제정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제규칙인 전자제시를 위한 UCP의 추록인 eUCP에서는 “Electronic Record”를 사용하였으나 그 정의에 대하여는 따로 언급 하지 않고 있다.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인 Incoterms 2010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 “Electronic Commerce(전자상거래)”를 “Electronic Communication”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여 진화하는 전자적 통신 방식 수용에 대응하였다. 또한 “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전자적 기록 또는 절차)”에 대한 설명을 삽입하여 “하나라의 전자메세지로 이루어지고, 종이서류에 상당하는 기능을 하는 일체의 정보²²⁾”라고 정의하였으나, ‘종이서류에 상당하는 기능을 하는 일체의 정보’라는 부분에서 인정하는 전자적 문서의 범위가 모호하여, 무역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증거조사 단계에서 제공되는 자료들 중 휴대폰, Tablet PC등의 어플리케이션 및 메신저 등과 같은 새로운 IT 통신 수단으로 상호 교환된 비즈니스 협의 사항에 대한 Data가 증거로써의 채택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2. 전자증거개시(e-Discovery)와 전자적 자료(ESI)

증거개시(Discovery)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실행되어진 소송절차의 특징 중 하나로, 소송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소송과 관련하여 변론 전에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법제도이다.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or Electronic Discovery)는 기존 증거개시의 대상을 종이로 인쇄된

19) “전부 또는 일부 국제해상물품운송계약에 관한 UN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Wholly or Partly by Sea)”의 약칭으로 국제해법회(CMI)의 주도로 새롭게 제정된 해상운송과 관련된 국제규칙이며, UNCITRAL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008년 12월에 개최된 제63차 UN 총회(비엔나)에서 성립.

20) Rotterdam Rules Article 1(17)

21) Rotterdam Rules Article 1(18)

22) Incoterms 2010, 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 A set of information constituted of one or more electronic messages and, where applicable, being functionally equivalent with the corresponding paper document.

인쇄물인 서류에 제한되던 것을 전자적 자료(ESI,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에 확대 적용한 증거개시절차를 나타낸다. 2006년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을 개정하면서 증거개시의 표준 속에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ESI)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구체화 시키면서 전자증거개시 절차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탁희성, 2011). 이러한 이면에는 정자통신 기술의 발달로 기업 및 개인 간의 업무처리 관습이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전자증거개시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각국의 중재기구에서도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은 2008년 ICDR Guidelines(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ICDR) Guidelines for Information Disclosure and Exchang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ceedings)를 마련하여 제4조에 전자증거개시규정을 삽입하였으나, 상세한 규정은 전통적인 증거개시요구에서 발생하는 쟁점과 별도로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야기할 수 있어 최소한의 규정만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CIArb(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가 2008년에 제정한 ‘중재에서 전자증거개시를 위한 의정서(Protocol for E-Disclosure in Arbitration)’은 전자증거개시에 대하여 14개 조항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을 두고 있다. CPR(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nflict Prevention & Resolution) 역시 2008년에 ‘상사중재에서 문서 개시 및 증인 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Disclosure of Documents and Presentation of Witness in Commercial Arbitration)’를 제정하였으며, 전자증거개시에 관한 방식들을 제공하여 당사자들이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ICC Rules, IBA Rules 등 전자증거개시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문서에 대하여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문서도 포함시키고 있다.

전자증거개시에 사용된 용어 전자적 자료(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SI)에 대하여 Adam I. Cohen와 G. Edward kalbaugh는 2009년 12월에 발간한 “ESI Handbook(2010): Sources, Technology and Process”에서 ‘컴퓨터나 컴퓨터 기반 디바이스를 통해 생성되고 또한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저장되는 모든 디지털 정보를 나타낸다²³⁾’고 정의하였다. 전자적 자료에 대한 구분은 원본데이터, 메타데이터, 이미지파일 3가지 형태로 크게 분류하며, 작성형태에 따라 원본파일,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 이미지, 문자, 아스키코드, 변환 형식, 비디오와 오디오, 종이문서, 자동화된 소송지원(ALS)형식과 온라인 전자적 자료(ESI)

23) Adam I. Cohen & G. Edward kalbaugh, “ESI Handbook: Sources, Technology and Process”, 2010 Edition, Aspen Publishers, P. 2-3, “Essentially ESI is any digital information generated by a computer or computer-aided device and stored in a form retrievable by a computer or computer aided device.”참조, 탁희성,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p. 34에서 재인용.

보관 등으로 다양하게 유형화 할 수 있다(탁희성, 2011).

기업 간 분쟁 발생시, 전자증거개시 제도가 활용되어 ESI를 요구하게 될 경우에는 종이 서류에 상당하는 전자문서 외에 SNS 등에서 계약조건과 관련된 대화형식의 자료 역시 ESI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 즉 SNS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화형식으로 진행되거나 영상 통화 또는 음성통화형식으로 진행된 사항은 무역계약의 불요식계약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기에 Incoterms의 개정에 있어서 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사항에 관련하여 아래 용어의 재설정 부분에서 보충설명을 하였다.

3. Incoterms에 사용된 전자정보 관련 용어의 재설정

Incoterms 2010에서는 전자무역관습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전자정보와 전자문서를 수용하기 위해 용어 “Electronic Communication”을 사용하였으며, “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 용어 설명을 처음으로 추가하여, 전자적 기록과 절차에 대하여 정의하였다. 하지만 사용된 용어와 용어 설명이 상세하지가 않아, 해석과 이해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8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안한다.

첫째, Incoterms 2010에서 사용된 용어 “Electronic Communication”은 우리나라 언어로 “전자적 소통·통신·의사표시” 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되는 입장에서 “전자적 통신”으로 해석이 될 것이며,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비즈니스 미팅 차원에서는 “전자적 소통 또는 의사소통”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법률적 시각으로는 “전자적 의사표시”가 더 적합할 것이다. Incoterms 상에 사용된 용어에 대하여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해석 될 경우, 의미는 유사하지만 용어의 정의가 상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법률적 분쟁이 발생 되었을 경우, 이러한 용어의 수용범위가 최종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용어 “Electronic Communication”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삽입하여 그 정의와 범위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Incoterms Rules은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주요한 요소인 거래조건을 규정한 국제규칙임을 고려하여, “Communication”에 대한 해석은 법률행위인 “의사표시”로 번역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즉 “Electronic Communication”은 “전자적 의사표시”로 해석한다. 8차 개정에 “Electronic Communication”에 대한 설명을 삽입한다면, 그 내용은 “매매계약에 있어 거래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당사자의 의사표시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한 새로운 전자통신방식을 포함한다.(An indicate the parties’ to a transaction intention by electronic means that affects the determination of the terms of the sales contract. It includes a new electronic communication method by the develop-

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와 같이 거래당사자의 법률적 효력을 가진 의사표시임을 나타내며,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전자적 기록 또는 절차)”의 설명은 Incoterms 개정 역사 상 최초의 적용이라는 부분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설명 내용 중, ‘중이서류에 상당하는 기능을 하는 일체의 정보(being functionally equivalent with the corresponding paper document.)’라는 부분은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이나 중이서류와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전자서류에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하지만 불요식계약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전자적 자료(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성으로 분쟁 발생시 또는 불요식계약 형태에 속하는 경우 등의 전자적 기록에 대한 허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무역계약은 계약의 내용·방식 및 체결 등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유상계약(Remuneration Contract) 및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이라는 4가지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중 불요식계약은 반드시 서류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특별한 형식 없이 구두나 행위 또는 서명에 의하여도 의사합치만 확인되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으로 구두계약을 포함한다. 이러한 불요식계약은 서류라는 계약증빙을 작성하지 않아 분쟁 발생시 문제가 되기도 한다. Incoterms는 무역거래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예방하고 해석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국제무역규칙으로 분쟁해결 절차에서 진행되는 전자증거개시에 대하여도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Incoterms 2010에서 Introduction 부분의 “4. Remember that Incoterms rules do not give you a complete contract of sale”에서는 ‘매매대금 지급방법이나 소유권의 이전 계약위반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상의 명시조건이나 그 준거법에 의한다’라 명시하였다. 이는 매매거래에서 물품의 위험분기점과 운송비용의 책임 부담 등을 결정하는 거래조건 외의 부분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타 조건(중재, 불가항력, 대금지불방식 등)이나 양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된 준거법에 의한다는 것으로 Incoterms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를 해석할 수 있는 준거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Incoterms Rules과 각국의 입법 및 중개 관련 법규에서 사용된 Data Message, Electronic Communication, Digital 및 e-Discovery 등의 용어는 그 정의와 범위가 상이하거나 관련 규정이 없을 수도 있다. 이에 Incoterms Rules에서는 사용된 용어에 대한 정의와 그 범위를 상세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별도의 설명을 삽입하지 않는 경우, 세계에서 가장 범용성이 높은 국제규칙에 의거하여 용어의

정의와 그 범위를 통일화하여 국제규칙과 각국 입법 간의 혼동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ICC는 교역군 간의 상이한 법률체제와 언어, 관습 등의 차이로 야기되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무역관습을 영문 알파벳 3개 단어로 정형화하여 Incoterms Rules을 제정하였다. 산업의 진화와 더불어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개정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8차 개정인 Incoterms2020을 준비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국제무역에서의 종이서류가 전자문서로 대체되어 전자무역관습이 탄생하였으며, 이러한 전자무역관습은 5차 개정인 Incoterms 1990에서부터 반영되었다. 5차 개정에서는 최초로 EDI방식이 수용되었으며, 6차 개정에서는 용어 EDI를 Electronic Commerce로 변경하여 수용범위를 확대하였다. 7차 개정에서는 점차 진화하는 전자적 기술변화를 고려하여 Electronic Commerce를 Electronic Communication으로 변경하여 전자문서에 대한 수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처음으로 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에 대한 용어설명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Incoterms에서는 전자문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나 규칙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전자문서와 전자적 교환 방식의 수용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Incoterms가 계약서 서류의 구성 내용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국제무역관습을 정형화하여 그 해석을 통일한 관습법이기 때문이다.

Incoterms 7차 개정 이후, 전자무역관습의 주요 변화는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업무를 수행한다는 개념인 스마트워크와 그 대표적인 업무형태인 모바일오피스의 등장이다. 사무실에서만 가능하던 문서 작성과 업무 진행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해외출장이나 현장 등 외부에서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해외에 있는 파트너사와 휴대폰의 인터넷과 소프트웨어인 어플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각 종 서류의 교환과 업무적 협의(채팅, 통화, 영상통화 등)가 가능해져 매매계약의 당사자 간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었다.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중 불요식계약은 특별한 형식 없이 구두나 행위 또는 서명에 의하여도 의사합치만 확인되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으로 구두계약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전자무역관습으로 볼 수 있는 모바일오피스와 SNS 어플 등을 사용하여 무역계약과 관련한 의사표시는 불요식계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무역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 중 변경사항 등이 서류화되기 전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불요식계약상태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SNS 등을 활용하여 진행된 무역계약 관련 협의내용이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전자무역관습의 변화를 새로 개정되는 Incoterms Rules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Incoterms 2010에 반영된 전자무역관습 관련 내용의 한계성을 도출하고 아래와 같이 개정방향에 대하여 두 가지의 의견을 제안하였다.

첫째, 용어 “Electronic Communication”은 각 국의 언어로 번역될 경우, 의미는 유사하나 그 정의와 범위가 상이한 여러 가지 용어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Incoterms Rules에 용어설명을 추가하여 그 정의와 범위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에 대한 용어 설명 중, ‘종이서류에 상당하는 기능을 하는 일체의 정보(being functionally equivalent with the corresponding paper document.)’라는 부분은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이나 불요식계약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전자적 자료(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를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전자적 기록의 허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Incoterms 2010에서 Introduction 부분에서 언급된 준거법은 Incoterms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님을 고려하여, 별도로 용어에 대한 정의와 그 범위를 규정하거나, 세계 각국이 인정할 수 있는 국제규칙을 그 기준으로 설정함을 명시하여 국제규칙과 각국 입법 간의 혼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Incoterms 8차 개정에 전자무역관습의 변화를 적용하기 위하여 최근의 전자무역관습과 7차 개정의 한계성을 도출하여 향후 개정방향을 제안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경남·박지혜·정도범(2011), “스마트폰의 특성이 개인의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혁신저항성의 조절효과,” 「정보시스템연구」, 제20권 제2호, pp. 57-80.
- 김안식(1988), “國際貿易制度·節次의 近代化 및 電算化에 관한 研究”, 「무역학회지」, 제13권, pp. 9-26
- 김안식(1985), “國際貿易慣習의 變遷過程과 Documentless Trade에 관한 研究”, 「무역학회지」, 제10권, pp. 7-33
- 김철호(2014), “국제무역 패러다임의 변화와 전자무역관습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 제15권 제1호, pp. 123-142
- 김철호(2010), “U-Trade 시대의 전자무역과 국제무역관습의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5권 제2호, pp. 81-100
- 남수현·노규성·김유경(2011), “스마트워크 수준 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제9권 제4호, pp. 191-200.
- 박승권·이주한(2012), “스마트워크 추진체계 및 사례”, 「한국통신학회」, 제29권 제12호, pp. 3-9
- 방송통신위원회(2010), “스마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방안”
- 서아영(2012), “스마트워크(Smart Work)환경에서 개인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비즈니스연구」, 제13권 제3호, pp. 427-459
- 성민경·방선희·권성호(2011), “스마트워크(Smartwork)로 인한 개인생활과 업무 변화 인식에 관한 연구-스마트워크 참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제7권 제3호, pp. 79-107
- 심원보(2012), “스마트워크 활성화 방안연구; 국내외 스마트워크 사례연구”, 송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종석(2010),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UN협약의 규정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1권 제1호, pp.437-460
- 양영환(1991), “改正 1990年 인코텀즈의 特徵과 運用上의 問題點에 관한 研究”, 「한국경제」, 제18권 제1호, pp. 51-80
- 양제모(2011),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한 소고”, 「재산법연구」, 제28권 제2호, pp.175-199
- 이정호(2001), “Incoterms 2000의 거래조건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연구」, 제5권 제2호, pp.125-144
- 탁희성(2011),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pp. 11-145
- 한낙현·김은주(2003), “해상적하보험계약의 클레임 준거법 조항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25권 제2호, pp.57-87
- 朝岡良平(1983), “貿易売買と商慣習”, 第三版, 「東京布井出版」, pp. 80-92
- 朝岡良平(1981), “貿易売買と商慣習”, 第三版, 「東京布井出版」, pp. 80-92
- Adam I. Cohen & G. Edward kalbaugh, “ESI Handbook: Sources, Technology and Process”, 2010 Edition, Aspen Publishers
- 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ICC(1990), Incoterms 1990

ICC(1999), Incoterms 2000

ICC(2010), Incoterms 2010

Rotterdam Rules,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Wholly or Partly by Sea

UECIC,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UETA,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UNCITRAL Model Law

ICC商法与惯例委员会秋季会议召开(2017.10.12.), 中国贸易报社, Available at

http://www.chinatradenews.com.cn/epaper/content/2017-10/12/content_48608.htm

ICC(2018), Incoterms rules history, [https://iccwbo.org/resources-for-business/
incoterms-rules/incoterms-rules-history/](https://iccwbo.org/resources-for-business/incoterms-rules/incoterms-rules-history/)

ICC(2018), Project for 2018, [https://www.iccwbo.be/the-commissions/commercial-
law-and-practice/](https://www.iccwbo.be/the-commissions/commercial-law-and-practice/)

ICC(2017), Incoterms 2020, <http://www.iccnorge.no/4706-Incoterms-2020>

Olegario LLamazares(2017), Incoterms 2020: main changes, Available at

https://www.globalnegotiator.com/blog_en/incoterms-2020-main-changes/

Incoterms® 2020 Drafting Group Meeting, (2017), ICC,

<https://www.iccwbo.be/event/incoterms-2020-drafting-group-meeting/>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EA%B4%80%EC%8A%B5>

A Study on the Revision Direction of Incoterm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e-Trade Customs

Woo-Kyung Jung

Tae-In Kim

Abstract

The ICC is amending international trade rules such as Incoterms to respond to periodically changing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s. Moreover, a drafting group has been formed for developing the eighth amendment and the Incoterms.

Due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terest in smart work is increasing globally. Smart work is a concept that enables works to be performed without time and space constraints, and the mobile office is a typical form of smart work. Smart work has brought significant changes to the way that workers perform their jobs, and it has considerable impacts o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on electronic trade customs and analyzes the revision process of Incoterms for electronic document informatization. Also, we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8th amendment of Incoterms.

〈Key Words〉 Incoterms 8th Revision, e-Trading Customs, Smart-works, Mobile-offices